

법률 제8476호
[건설기술관리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대형국책사업 및 민자유치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건설기술자 등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하여 수요예측의 실효성 확보와 국가 재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중대건설공사현장사고의 체계적인 조사를 위하여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안 제20조의4제1항제9호 신설, 안 제21조의4제1항, 안 제41조의3 신설)

타당성 조사시 수요예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수행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는 설계등 용역업무의 수행을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설계등 용역업자 등에게는 부실벌점을 주도록 하며, 설계등 용역업자에 대하여 벌칙에 처하도록 함.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적서 허위발급에 대한 제재(안 제26조제1항제3호의2 신설)

(1) 일부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시험결과를 조작하거나 시

험을 하지 아니하고 성적서를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와 같은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음.

- (2)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성적서를 거짓으로 발급한 품질검사전문기관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3) 품질시험 및 검사 성적서 허위발급의 근절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미제출시 제재규정 마련(안 제26조의2제4항 내지 제7항 및 제43조제1항제3호 신설)

- (1) 건설공사 사후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에서 건설업자 등으로 하여금 건설공사의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미제출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음.
- (2)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을 실시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3)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제출 및 관리가 활성화되어 건축물 등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안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 신설)

- (1) 대형 건설공사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대책마련이 미흡한 문제가 있음.

- (2) 건설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건설공사의 허가 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은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중대건설 현장사고를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할 수 있도록 함.
- (3) 건설공사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6 및 제26조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률 제8406호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산업현장의 수요에 부합하는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배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제도를 변화하는 산업수요에 맞도록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교육훈련 실시(안 제15조의2 신설)

- (1) 한번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은 산업수요 및 기술변화

와 무관하게 그 효력이 평생 지속됨에 따라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발생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있음.

- (2) 노동부장관은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가기술자격 취득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3) 국가기술자격 취득자가 관련 직무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하고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안 제24조의2 신설)

- (1)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검정업무의 위탁을 확대하였으나, 검정업무 위탁의 취소 등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음.
- (2) 수탁기관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검정업무를 위탁받거나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주무부장관이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거나 검정업무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 (3) 검정업무 수탁기관에 대한 검정의 질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질적 수준 및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가기술자격 검정 시설 등의 확보(안 제24조의3 신설)

- (1) 검정기관이 낙후된 교육훈련기관의 시설·장비를 임차하여 국가기술자격 검정을 시행함에 따라 산업현



장에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과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2) 노동부장관 등은 산업현장에 부합하는 자격검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검정 시설·장비를 확보하도록 하고, 노동부장관 등이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을 위하여 기업, 교육훈련기관 등 민간기관의 시설·장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3)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시행에 민간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현장성을 제고하고 검정 시설·장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법률제8384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

1. 개정이유

택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 보상을 노린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기 위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도 건축행위 등을 제한하는 지역에 포함시키고, 민간부분의 주택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를 도입하며,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대한 전매차익을 차단하기 위하여 택지의 전매행위를 제한하고, 택지개발기간을 단축하여 주택공급을 조기화하기 위하여 택지

개발사업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 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

가. 행위제한 대상지역의 확대(안 제6조제1항)

토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안에서도 토지개발예정지구안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함.

나. 공공·민간 공동사업시행제도의 도입(안 제7조제1항제4호)

「주택법」 제9조에 따른 주택건설 등 사업자는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개발예정지구안의 토지면적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도시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공익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공사·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 등 공공시행자와 공동으로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다. 택지개발사업 관련 절차 간소화(안 제8조,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1) 건설교통부장관이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택지개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과 택지개발계획의 수립을 일원화함.

(2) 택지개발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을 승인을 얻으려는 경우

에는 택지개발사업실시계획에 택지공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택지공급에 관하여 따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함.

라. 택지의 전매행위제한 등(안 제19조의2 신설)

이 법에 따라 조성된 택지를 공급받은 자는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 해당 택지를 전매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당해 택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해당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며, 당초의 택지공급자가 해당 택지를 환매할 수 있도록 함.

3.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조의2·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